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

2025.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CONTENTS

1.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산 대책 변혁) 내가 키울 수 있는 내 아이, 우리 가족** 01
 - 저출생이 학생 교육여건 후퇴 초래...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 회복
 - 기존 '국가 책임 양육' 저출생 대책 한계...'가정 중심 양육' 정책으로 전환
 - 민간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매칭펀드 형태 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
 -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완성
 - 출산장려책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 메리트 제공

2.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권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09
 -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경찰 무혐의/교육청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사안은 불송치
 - 교원지위법 개정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토록 개정
 -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 체험학습 제도 개선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 학교폭력 명칭을 '학생폭력'으로 변경
 -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단계적 전 학교 배치)
 -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 단위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학생·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3. **(교육본질의 회복)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17
 -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교원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또는 폐지
 -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적 근거 마련 및 인력·예산 지원 확대

4. (교사도 국민입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1
- 공무담임권, 사적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철폐	
5. (교사의 교육전념여건 마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25
- 교원이 원천 배제되는 교원보수 논의구조 해소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제화	
6. (안전하고 개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29
-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7. (급식/돌봄 파업 대란 없는 학교)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33
-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8. (유치원이 아닙니다. 유아학교입니다)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37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 학급당 유아수 감축, 유치원 교원 증원	
9.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41
- 특수학생 대상 학급 설치 기준 보완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 시·도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최소 1개교 이상 설립	
10.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지원)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지원	45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발전·진흥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기업·공기업·공무원 채용 확대 개선	
- 중등직업교육-고등직업교육 연계 지원	

01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저출산 대책 변혁
내가 키울 수 있는 내 아이, 우리 가족

1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저출산 대책 변혁 내가 키울 수 있는 내 아이, 우리 가족

▶ 저출생이 학생 교육여건 후퇴 초래...**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 회복**

- 저출생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교육비임에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을 감축하는 악순환부터 타파
- 학교의 역할을 돌봄 위주로 넓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을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 여건 마련 필요

▶ 기존 ‘국가 책임 양육’ 저출생 대책 한계...**‘가정 중심 양육’ 정책 전환**

- 자녀를 ‘맡긴다’는 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출산 자체에 대한 기피 심화
- 공공부문만이 아닌 **기업 참여 유도 등 전방위적 대책 필수**
 - 공무원의 높은 출산율 배경 등 효과성이 입증된 결혼·출산·육아제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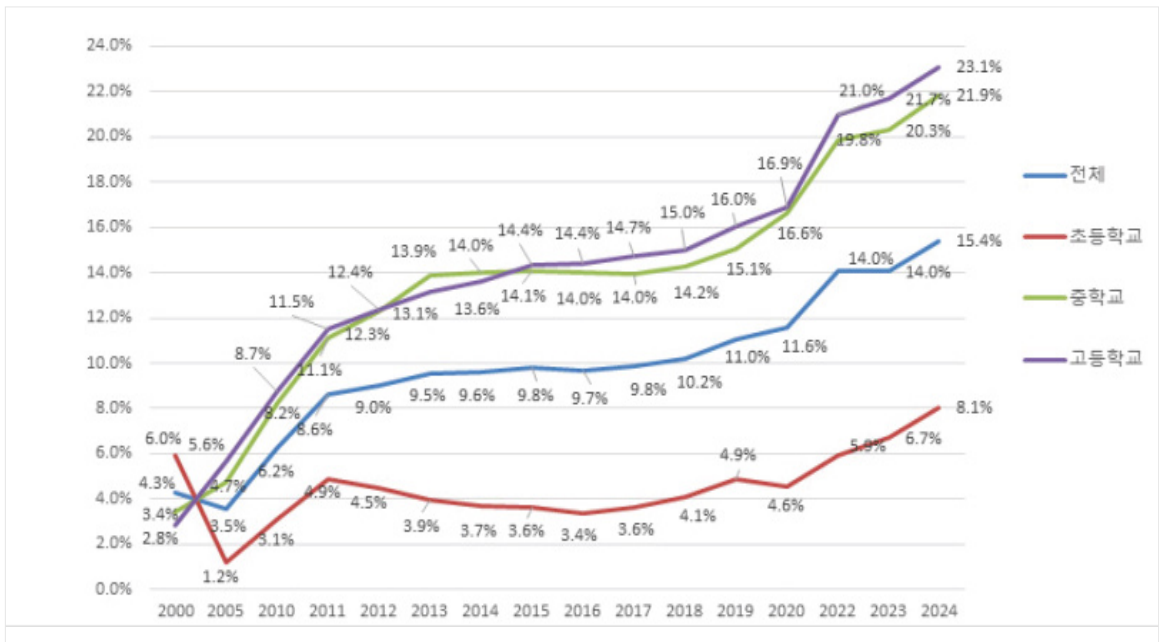
▶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사회적 지지 기반 형성

- 자녀를 옆에 두고 케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업에 **설치 및 운영비용 정부부담 1:기업부담 1로 매칭 펀드 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
-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완성**
 - 부모 모두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보장, 언제든 분할사용 무제한
 - 경제적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100%, 휴직 전 기간 지원 (상한액은 해당연도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중위소득 기준)
- **출산장려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무적응 기간 부여 및 해당 기간 보수의 70% 지원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대상자의 업무수행을 대신하는 **동료에 대하여 5명까지 월 50만원 지원**

● 저출생 빌미로 경제논리만 부각...교육여건 후퇴, 교육본질 훼손 회복 필요

- 통계청(2024) 조사 결과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국가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 논리만 강조, 교원정원 감축 기조 가속화
-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4차 산업혁명 대비 AI교육, 과밀학급 등 교원의 증원이 필요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필요한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는 형태가 지속됨. 이로 인해 정규 교원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급격히 올라가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15.4%로 폭증함. 특히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며, 사립은 더 심각해 중학교 35%, 고교 36%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임.

[연도별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2000~2024)]



※ 자료. 교육통계연보(연도별) 재구성.

- 저출생 문제는 교원 감축으로 이어져 교단의 비정규직화와 함께 교육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도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음. 실제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총 219,918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0,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저출생 문제가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저출생 대책의 기본방향이 한계를 드러낸 국가책임양육시스템 확충에 쏠려있음. 이로 인해 돌봄·사회복지정책의 학교 투입이 이어져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본질이 무너지는 상황임.

- **맞벌이 가구 역대 최대,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최대인 상황의 본질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것이나, 자녀를 ‘맡긴다’는 죄의식 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 심화**
 - 통계청 조사(2023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현황) 결과, 대한민국 2집 중 1집(48.2%)이 맞벌이 가구인 현실 속에서,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50만2천원으로 외벌이 가구보다 높았으며(아버지 외벌이 46만4천원, 어머니 외벌이 31만5천원), 사교육 자체의 참여율도 타 가구유형보다 높은 82.2%에 달함.
 -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 참여의 이유를 퇴근시간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것이나, 결국 사교육비 부담에 더해 내 자녀를 내가 돌보지 못한다는 죄의식도 가중되는 현실임.

※ 부모가 맞벌이하하는 동안 학원에 맡겨진 아이의 정서 상태

(2025.3.28., 지식인사이드 “인간설명서 ep.15.”)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문제가 생겨도 ‘자는게 엄마 소원이다’라고 말하며 피곤해하는 엄마 모습에 눈치를 보면서 대화하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교사가 바라보는 맞벌이 부모님은 학교에 상담하러 오시면서 미안함이 기본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에 울면서 상담을 시작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공개수업에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뒤를 계속 돌아보다가 부모님이 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또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이런 경험이 반복될 경우,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어색해져서 고학년이 됐을 때 엄마가 학교에 오면 오히려 짜증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 **그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론이 국가가 대신 키워주는 방안이 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확보해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임.**
 -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를 강조하면서, 현재 한국의 보육시스템은 맞벌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력 중단 여성들은 적절한 보육 옵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음.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지출이 단순한 아동 현금수당보다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 아이들이 엄마·아빠와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지만 부모들이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음.
-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공적 돌봄(보육)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임.

※ 아이를 원치 않는게 아니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다

- 2030이 아이를 낳지 않는 진짜 이유

(2024.11.21., EBS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 2부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

“부모도 아이와 함께하고 싶지만,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바빠서 집에 올 시간이 없는 것이 짱아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을 넘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보육시설로도 모자라 어린아이들을 학원에서 전전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안되는 (돌봄 지원)구조 중 하나가 기업 부분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받쳐줄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행하려는 기업도 없고, 국가는 압력을 가하지도 않고... 오로지 모든 어려움을 조정해야 할 사람은 부모와 그 자녀들입니다.”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주 소환됐던 건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도 학교에서 너무 오래 생활하는 걸 많이 버거워해요. 애들이 원하는 건 부모님이예요. 엄마, 아빠들을 직장에서 일찍 돌아오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못할 때 돌봄 정책이 개입되는...”

“한국에서 이상적인 근로자는 성인 초기에 일하기 시작해 육아,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시간도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1950년대의 노동력을 위해서는 완벽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부모)이나 남성(부모)에게도 매우 나쁘지만 남성에게도 나쁘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나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 소위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로 일컬어지는 세대론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시간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편 사회를 위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는 비판적

- 한국행정연구원(2022)의 MZ세대 조직문화 연구에 따르면, MZ세대는 일의 생산성을 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삶이 생산적이어야 일이 생산적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 MZ세대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인구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봄.

※ 경제미디어 어피티의 MZ세대 대상 출산율 관련 설문조사 주요 결과 (2024, 925명)

- 53.8%가 자녀계획이 없으며,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는 응답
- 해결책으로는 유연한 근무시간과 재택근무 활성화, 출산 후 복직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및 급여 상향 제시

● 출산 후 대부분 부모는 단기간 휴가 · 휴직 후 집 근처 사설기관을 수배해 말도 트이지 못한 아이를 맡기고, 가장 늦게까지 남는 아이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현실

- 2023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286,487명),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57.3%(580,083명)로 사설기관 이용이 압도적인 상황임.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6.1%(61,570명)에 불과함.
- 외국의 경우 부모가 영 · 유아를 양육하면서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고안

※ 캐나다의 스트롱 스타트 프로그램 (Strong Start Program)

- 보호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철칙임. 부모나 조부모, 아이돌보미와 함께 집에서 지내는 0~5세 영유아라면 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프로그램 이용 가능
- 부모 등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불안감 없이 그야말로 단단하고 강력한 출발(스트롱 스타트)을 통해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에게 연결과 공존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긍정적 효과 양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가임기 여성의 고충도 해소 불가 상태임.

-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 호주 · 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음. OECD 국가 평균은 18.5주이며, EU 국가 평균은 21.1주임.
- 기간도 짧지만, 이용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음.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이며,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적음.

- 유급 육아휴직도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 외에는 우리보다 적은 나라가 없었음.
 - 현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저조한 이용률은 육아휴직 등에 인식한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대체율(월 250만원 상한), 분할 횡수와 기간 제한 등으로 여겨지고 있음.
 - 특히 직장 복귀 후 직장 내에서의 입지 불안, 경력단절과 더불어 고령화 시대의 노후 부담까지 감안하면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
- **공공기관·공무원·교사 직군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감안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출산 시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차원으로 보전 필요**
 - 대표적인 계획도시이자 타·시도에 비해 공무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자료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도로 나타나고 있음.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고용 안정성,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휴직의 용이성, 경력단절 위험이 낮다는 것이 주요 이유임은 주지의 사실임.
 - 이러한 공기관의 정책과 환경을 민간기업이 알아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함. 노동 인력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등이 필수적임.
 - 현재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 있고, 선도적인 기업 차원에서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호응도가 높음. 금액 기준을 상향하여 유인가로 적극 활용할 필요
 - 자녀 출산이 각 개인에게 ‘현재보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임. ‘현재보다 기업 이익에 피해가 없을 때’ 민간기업의 출산장려책 시행도 가능할 것임.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제공하여 사회구조적 기틀 형성 필요

02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권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2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권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학생·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 제도 정착

-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직에 비해 2.16배 높다는 2024년 서울대 의대 연구결과 발표
- 교원의 심리·정신 건강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학습 환경에 중요한 역할
-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정(2025.1.12.) 및 시행(2026.3.1.)에 따른 하부 법령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 교원지위법 개정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토록 개정

▶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 학생안전관리 업무 수행 등은 별도 보조인력 배치·운영 기본원칙 확립
- 과도한 행정업무 양산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정비 및 교육청 행정전담 체계 구축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지원 등에 관한 교육청 단위의 운영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칙 및 조례 보완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해 개정
- 학교폭력의 명칭을 '학생폭력'으로 변경

▶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및 역할 확대

-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궁극적으로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추진
-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확대 : 직접적인 학폭관련 업무 +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관리 및 운영 등 교내 범죄·안전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사위원 참여 확대 필요

▶ 단위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위원 전문성 부족으로 심의 결과의 신뢰성 문제 및 성고충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간 갈등으로 학교 교육력 저하

● 학생·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2024년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공무원 산업재해 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상담 인력 확충(온라인 상담 등), 심리상담 및 비용 지원 확대, 필요한 경우 병가활용 보장 등 지원체계 마련
- 교원의 심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마음 챙김, 정서 조절 등 연수 마련
- 현재 학교는 7만 6,663명에 당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 중 21%(1만 6,288명)는 전문 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74명→2023년 111,587명)으로 증가 △3만 1,541명에 달하는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18만 1,178명이 있어 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음.
- 이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제정(2025.1.21.) 제정되어 시행(2026.1.21.)이 되는데, 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하부법령 마련과 학교현장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여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9개월(2023. 9. 25. ~ 2024. 6. 30.)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553건. 이중 387건(70%)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 제출됨.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160건 중 137건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되는 등 무분별한 신고가 여전함.
-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게 한 교사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 유사한 사례에 대해 조사·수사기관,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정서학대의 모호성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불안감 높음.
-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돼 있음.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신고를 일삼는 학부모로 인해 교원의 심신 피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됨에도 학부모는 어떠한 책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교육청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무혐의인 사건까지 모두 검찰에 송치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으로 수사한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종결함으로써 억울한 교원 보호 강화
-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 △2021년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및 의견서 제출토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의 단서조항 신설

단, 제11조의2의 제2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과도한 민원, 고소 등 빈발로 교원 의원면직, 명예퇴직 및 우수한 인재의 교직 기피 현상 심화로 교육력 저하 우려

- 교원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
의원면직(명)	642	690	717	924	943	36
명예퇴직(명)	5,689	5,763	5,862	6,480	6,524	3,486

- 10년 차 미만 교사 퇴직자 수도 2020년 448명, 2021년 466명, 2022년 531명, 2023년 576명으로 최고치에 달함.
- 전국 교대 자퇴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13개 교대·초등교육과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의 30.9%를 뽑지 못하는 등 신입생 모집도 난항
- 전국 교대 자퇴생 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퇴생	139	233	272	370	478	621

●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 및 지원 강화 필요**

- 한국교총 설문결과(25.3.14~18. 교원 6,111명 대상),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 체험학습 중단해야 한다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단·폐지 의견이 81.8%에 달함.
- 안전관리 전담팀 구성 등 도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관련 소송 발생시 교원에게 소송비 지원을 비롯한 소송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할 것임.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지원 등에 관한 교육청 단위의 운영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칙 및 조례 보완 절실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시 보조인력 배치·운영 원칙

1. 교육청(교육감)이 보조인력에 대한 배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풀을 확보·운영할 것
2.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추진시, 필요한 보조인력을 교육청에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보조인력을 해당 학교로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
3. 보조인력의 역할은 관련 법상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담당하고,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 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안전관리조치만으로도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상의 각종 행정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에서 교사분리 및 매뉴얼 자체의 정비 필요
- 교육청과 지자체가 개발 또는 검증한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시 관련 행정업무 및 안전조치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로 인해 학교가 학교 밖,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안 처리에 한계 발생**
 - 현행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방과 후 학원, 가족 간 여행지에서 발생한 일, 일면식 없는 타인의 SNS 욕설 등 교원의 생활지도가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모두 학교가 처리하고 있음. 심지어 가정 내의 형제간 다툼에 대해 동생이 형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도 발생했으나 신고가 된 이상 학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실제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장소의 26.7%가 학교 밖, 사이버 공간인 것으로 나타남.
 -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 의한 폭력인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함.
 - 학교폭력 가·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을 겪게 됨. 학생들에게 사실 관계를 묻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것을 두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했다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됨.

-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를 확대하고, 직접적인 학폭업무뿐만 아닌 학교안전지킴이 역할 및 CCTV 관리 및 운영 등 교내 범죄·안전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필요**
 - 학교폭력과 관련한 과중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본연의 역할인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의 단계적 배치 확대 필요
 -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학교 수(SPO 1인당 10.7개교 담당)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필요.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거나 SPO 배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매년 단계적으로 배치 확대
 -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안전과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2.1%로 2023년 대비 0.2% 증가 및 2022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SPO 배치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현재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의 주요 역할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관련 정보 수집 외에도 향후에는 교육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지킴이 역할 수행, 교내 CCTV 관리 및 활용 지원,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초동 대응 업무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위원회 교사 참여 확대

-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2023. 3. 28)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한 교원위원으로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교사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임.
※ 전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수 3,482명 중 교사 위원 252명(7%)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 2025.3.7.)
- 이같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교보위 개최시 수업·학교 일정 등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으나, 교사의 참여 자체를 더 어렵게 하는 제약 요소도 존재함.
※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에 있어 학교장 추천을 의무화, 또 다른 지역의 경우 교사 위원 세부 선발 기준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력, 상담 관련 자격증 이외에 교육경력 20년 이상 3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2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1점을 설정해 교사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 그러나 유·초·중·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정작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은 매우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비율을 상향해야 함.

● 대다수 지역에서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를 담당(단, 인천, 대전, 충남, 충북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중)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조사 및 결정은 피해 및 가해 학생·교직원에게 삶과 인권·교권의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필요함. 그러나 단위 학교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보니 조사 결과 신뢰성 문제 제기, 학교의 부담 증가, 비슷한 사안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더군다나 과반수로 구성되는 외부 인사의 전문성은 고사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력 확보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심의를 실시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 필요

03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3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교원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또는 폐지**

▶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인력·예산 대폭 지원

●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교원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또는 폐지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종합대책 수립 필요
 - ※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업무는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전념(19.2%)과 교직 생활(18.2%)에 방해 요인임. (한국교총 설문조사, '23.5.)
 - ※ 교사 행정업무 시간(KEDI, '22) : ('13) 5.73시간 → ('18) 5.30시간 → ('22) 7.23시간
 - 교사 행정업무 시간 사용 비율(KEDI, '22) : ('13) 14.0% → ('18) 14.3% → ('22) 17.8%
-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이 타당한 업무부터 우선 이관 추진
 - 각종 인력 채용 및 관리 업무, 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 교육(지원)청 및 학교지원 전담기구
 -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 → 주민자치센터
 -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 지방자치단체
 - 학교 내 직종간 갈등 발생 업무에 대한 학교 밖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조사,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이관시스템 마련
- 학교 밖 요인으로 유발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과감한 규제 도입. 특히 상급기관의 정책 추진 등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유발 요소에 대한 규제 필요

●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적 근거 마련 및 인력·예산 지원 확대**

-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를 통한 업무지원 범위 확대 및 인력·예산 확충
-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경

※ 학교지원전담기구: 학교 공통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에 설치된 기구. 시도교육청별 자율 설치하는 비법정기구로 지역별로 지원에 편차 발생

04

교사도 국민입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4

교사도 국민입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사적영역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및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폐지

▶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 면직 없이 공직선거 출마, 선출직 공무원 재임기간 동안 휴직 처리 보장

▶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는 단계적 폐지

●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및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폐지

- OECD국가 중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 권고
- 교원의 학생 교육활동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 정치 후원금 기부 금지 등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개선 필요
 - 정치인의 SNS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경우조차 고발돼 징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가족, 친척과 공유하는 경우라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힘.

●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 대학 교수와 비교해 유치원 교원, 초·중등 교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면직해야 하고, 선출직 공무원과의 겸직이 안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음. 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원의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현장성 있는 교육 입법과 정책 수립에 한계
- 선거 입후보 시 면직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입후보 시기와 선출직 공무원 재임기간 동안은 휴직으로 처리
 - ※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제한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교육감 선거에 한정하여 실질적인 효과 기대, 여타 공직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입후보시 가능

●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는 단계적 폐지

-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임.
- 교원에 대한 모든 정치 활동을 동시에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우려를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단계적으로 실시
- 교원에 대한 모든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당법에 대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밝힘.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반대의견>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근무기간 확립은 국가공무원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당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 정당가입 금지로 실현되는 공익은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가입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 제약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 어려움.
- 대학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교육의 특성,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해 평등원칙에 위배

05

교직 특수성 반영한 처우개선 논의 기구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5

교직 특수성 반영한 처우개선 논의 기구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단체 참여 보장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단체 참여 보장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 개선 필요
 -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보수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정부 관계자, 공무원단체, 민간전문가, 언론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위원으로 참여.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국·공·사립교원(전체 공무원 수의 절반)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음.
 - ※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공무원노조 간 협의에 따른 사항
- 공무원보수 논의에 교원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교원단체의 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 일부 교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혹은 노동조합 추천 인사 참여시 교(원)장·교(원)감·전문직 등교원 전체의 보수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음. 모든 교원을 위한 보수 및 처우개선 논의를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참여 필요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필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교원 보수 우대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교원 전체 처우개선과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되어 있음.
 - 교원은 단일호봉제를 적용받아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체계에 변동이 없음. 이로 인해 타 직렬 공무원 대비 승진에 따른 처우개선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받던 담임·보직 수당 등을 받지 못하면서 승진을 해도 보수가 삭감되는 사례 발생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 제21대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안번호2114427)을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국가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함.

06

안전하고 개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6

안전하고 개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의 규모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 교원수급계획을 교원1인당 학생수 기반으로 수립함에 따라, 과밀학급·소규모학교 등 국내 교육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행정당국의 평면적 접근으로는 과밀학급 문제해결 불가능, 소규모학교의 여건 고려 미흡으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
 -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4」에서도 ‘교사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	15.8	13.1	10.5	22.0	26.0
OECD 평균	14.0	12.8	12.7	20.6	22.8

주 1)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 교사 및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수석교사, 보직교사, 실기교사 등)를 대상으로 산출(관리직 교원,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2) OECD는 고등학교 단계의 학급당 학생 수를 미산출

자료 : OECD 교육지표 2024

-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교원배치기준과 도심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배치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교원수급정책의 변혁 필요
 -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대, 중등 26명대로 나와있지만, 이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한 학년 전체를 통틀어 10명이 안되는 경우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로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른 상차·순회교사, 복식학급,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필요

- 특히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총 219,918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0,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심각함.
 -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학급 : 초등 77,284학급(61.9%), 중학교 45,955학급(84.6%), 일반고등학교 34,389학급(84.3%)
 -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학급 : 초등 20,100학급(16.1%), 중학교 30,451학급(56.0%), 일반고등학교 20,094학급(49.3%)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 교과목 수요요구 분석 결과, 주요 교과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목에서 교원 부족현상이 발생하며,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경우 최소이수기준 미달 학생에 대한 충분한 개별화 보충 지도 불가**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 역할이 지식 전달자였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 학생중심교육을 위해 학생의 교과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활동까지 가능해야 고교학점제 도입취지에 부합함.
- 무엇보다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의 경우, 교원의 부족으로 최소 이수기준 미달학생에 대한 충분한 개별화 보충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교학점제의 도입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성공하기 어려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선택에 의한 교과목 개설'이며,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수적이며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축소가 함께 논의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보장,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교원배치기준 변경 필요**

- 학생 기초학력의 정부차원 보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학급당 학생수 보장과 이를 통한 학생개별화교육, 촘촘한 학력신장 지원 및 피드백 등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함.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학생 맞춤형·개별화 교육 성공 및 과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학생 안전 담보를 위해서도 교원 증원 절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흥미에 맞추어 에듀테크를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학생별 수준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수업 혁신을 이끌어어나가는 주체로서 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적
- 과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학급당 20명 이하 학급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 정원 배치 기준을 바꾸어 교원 증원 필요

07

급식/돌봄 파업 대란 없는 학교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7

급식/돌봄 파업 대란 없는 학교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통한 학생 건강·안전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교육공무직의 연례화된 파업으로 공교육에 지장

- 교육공무직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파업이 연례화·대규모화 되는 경향으로 대책 마련 필요
 - 교육공무직원: 6만1천명(2012년) → 12만9천명(2022년)
-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돌봄이 중단되거나 학교급식이 간편식으로 대체됨.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리 종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 도시락을 제공받은 일도 있음. 또한 파업으로 단축 수업이나 재량휴업 등이 시행돼 정상적인 공교육에 지장 초래
 - 2024. 12. 6.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영향: 전국 3,293개교(25.9%) 대체식 제공
- 시도교육청 조례 등에 따라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이자 쟁의행위의 상대방은 교육감임에도 교육청과의 교섭 난항에 따른 파업의 효력은 학교에 작용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전제로, 최소한의 대체근로자 투입을 위한 법률 개정

-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자로서의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건강권·안전권도 동등하게 보호받고 존중돼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 급식, 돌봄활동 사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 필요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공무직원의 파업 중에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요구

※ 제22대 국회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안번호2205793)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필수공익사업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해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 업무의 도급·하도급 가능

08

유치원이 아닙니다. 유아학교입니다.

유아교육 국가책무 이행

8

유치원이 아닙니다. 유아학교입니다. 유아교육 국가책무 이행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지원

·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 학급당 유아수 감축, 유치원 교원 증원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유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선에 해당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교육 영역임. 이러한 인식 전환은 교육기관의 명칭 정비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돼 있어 유아교육 기관을 학교로 해야 함을 명시함.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유치원으로 초·중·고와의 명칭 연계성이 부족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적 위상이 약화되어 있음.
-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은 교육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반드시 '학교'를 포함한 형태로 지정해야 함. 이는 출발선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함.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지원 필요

- 2024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수는 전체 유치원의 약 61.5%를 차지하나, 실제 국공립 유아 자원 비율은 29.2%에 불과함. 이는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소규모 병설 형태로 운영되며, 유아 수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특히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580개교에 불과(약 11%), 대부분이 초등 병설유치원이라서 유아 중심 공간이 부족한 형태로 운영됨.

[설립별 유치원 현황]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유치원 수	3	0.0%	5,105	61.5%	3,186	38.4%	8,294
유아 수	241	2.9%	145,402	29.2%	352,961	70.8%	498,604

- 최근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심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공립유치원의 원아 모집률 하락과 병설유치원(1~2학년 운영)의 존폐 위기로 이어지며, 출발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출발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자원 우선적 투자 필요
 - 교육 중심의 독립적 공간 마련 등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확대
 - 유아 개인별 발달 지원과 교사의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학급당 유아수 감축
 -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취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 운영 및 예산 100% 지원
 - 유치원 교원의 업무 과중 문제와 병설 및 소규모단설 유치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교원 배치, 1학년 2교사제 도입 등 유치원 교원 증원 및 근무 여건 개선

09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9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급 설치 기준 재설정
 - 유·초등 : 장애학생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인 경우 2개 이상 학급 설치
 - 중·고교 : 장애학생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인 경우 2개 이상 학급 설치

▶ 지역별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학교 확충

- 시·도별로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최소 1개교 이상 설립

▶ 대학의 장애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발달장애 경증학생 등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학하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 보조원 지원 및 교원 대상 관련 연수 등 실시

● 일반학생들에 비해 학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개별화 교육인 만큼, 현행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더 낮춰야 함.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은 특수교육기관의 학급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 유치원 :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시 2개 이상 학급
 - 초·중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시 2개 이상 학급
 - 고등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7인 이하 1학급, 7인 초과시 2개 이상 학급
-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발달의 제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특성을 보임에 따라 일반학생의 경우도 유치원-초등학교의 연계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 발달의 어려움을 겪는 유아장애학생이 초등학교 진학 후 갑자기 다수의 장애학생들과 어울려 교육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움에 따라 기준 시정 필요
-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장애 수준이 초·중학교에 비해 낮지 않고, 오히려 물리적 힘은 더욱 강해짐에 따라 세심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감안할 필요

-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장애유형별 특수학교를 두루 확충하되, 최소한 특정 장애영역별 특수학교가 전무한 시·도는 없도록 1개교 이상은 우선 설립할 필요**
 -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달리 장애학생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더욱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고려할 때 향후 그 수는 더욱 증가 예상
 - 장애영역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지적문제보다 신체적 어려움에 따른 별도의 물리적 시설이 긴요한 시각장애·지체장애 유형과 관련하여 특수학교가 1교도 없는 시·도 존재
 - 특수학교에 따라서는 부득이 특수학교 설립 당시의 장애유형이 아닌 여타 장애유형 학생들의 입학 허용하지만, 맞춤형 교육이라는 특수교육의 특성상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등교육과는 달리 대학교육의 경우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개별 학생의 장애에 대한 인식·지원 미흡**
 - 중등교육의 경우 통상 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장애여부를 학교에 알리고 다방면 밀착지도가 이루어지는 편이나, 대학의 경우 본인 및 학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교수들이 알 수 없는 경우 다수
 - 특히 경증 발달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학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학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학부모·학생 입장에서는 낙인효과 우려 및 지원미비로 노출하지 않는 상황
 - 학습 보조원 지원, 교수 대상 특수학생 이해 연수 등 대학 및 국가가 제도적 보완 및 해결책 마련 절실

10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지원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지원

10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지원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지원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발전·진흥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진흥 도모위해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지역산업체 육성을 위한 시책 △ 직업교육진흥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본법 마련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기업·공기업·공무원 채용 확대 개선

- 고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업·공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 목표제 신규 도입 및 채용 목표 설정
 - 고졸 채용 결과 경영평가 반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성과 및 고졸자 지원 정책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
- 국가가 선제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
 - 직업계고 졸업자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기술직 외 행정직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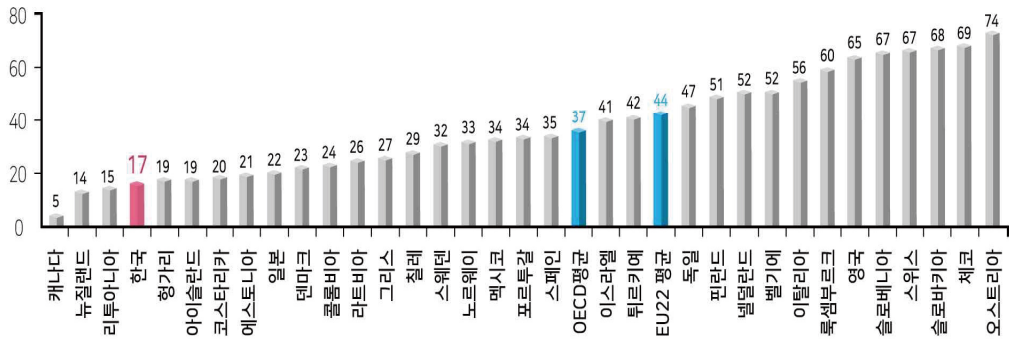
▶ 중등직업교육-고등직업교육 연계 지원

- 특성화고 졸업자 동일계 전형 5%~10% 이상 확대
-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교-대학 연계 교육 : 고교-대학 계약학과 운영으로 고교 → 대학 진학 → 계약 기업으로 취업

● 고학력·학벌사회에 따른 직업계고 인기 하락 및 직업교육 현장성 약화

- 2022년 중등 단계 직업교육 참여 비중은 17%로 OECD 평균(37%)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국가별 중등직업교육 참여율(OECD, '22)]



-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이 필요하나 현장실습 이외의 직무경험 기회 부족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 : ('16) 56.5 % → ('18) 22.5% → ('22) 27.4%
 - ※ 자료: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2023.8.
- 매년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빅데이터 등 급격한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부족

[특성학교 17개 교과(군)별 학과 수 현황(2011~2019)]

(단위: 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전체 학과 수	2,244	2,251	2,260	2,336	2,175	2,007	1,913	2,018	2,094	▼6.7%
분석 학과 수	2,230	2,234	2,247	2,308	2,153	1,992	1,904	2,013	2,087	▼6.4%
경영금융	352	361	407	445	439	412	405	427	455	29.3%
보건복지	35	47	50	55	58	55	59	60	64	82.9%
디자인문화콘텐츠	286	284	279	266	243	207	184	190	196	▼31.5%
미용관광레저	103	116	128	138	128	114	118	128	126	22.3%
음식조리	35	39	46	51	50	52	53	66	79	125.7%
건설	160	166	169	167	147	134	121	129	130	▼18.8%
기계	341	339	340	356	317	301	297	316	322	▼5.6%
재료	21	23	23	23	24	22	21	21	21	0.0%
화학공업	52	53	52	54	55	46	39	43	45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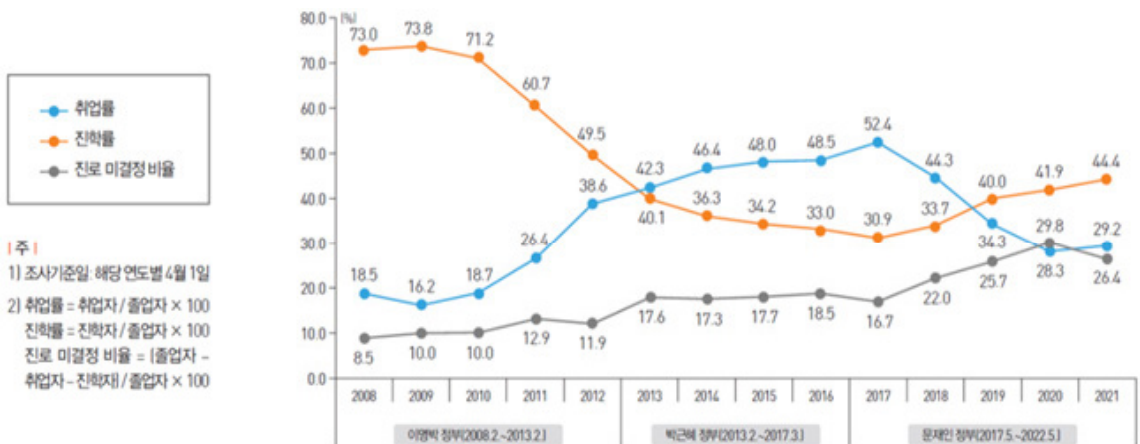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섬유의류	28	26	23	24	23	26	23	25	27	▼3.6%
전기전자	227	235	230	242	237	238	233	246	243	7.0%
정보통신	334	298	262	244	209	171	146	147	151	▼54.8%
식품가공	45	47	46	50	44	40	35	38	39	▼13.3%
인쇄출판공예	11	10	8	6	7	6	7	7	6	▼45.5%
환경안전	10	10	9	9	8	7	7	6	5	▼50.0%
농림수산해양	125	115	115	115	101	92	86	92	103	▼17.6%
선박운항	6	3	3	3	3	3	3	3	5	▼16.7%
기타	59	62	57	60	60	66	67	69	70	18.6%

※ 자료 : 허영준 외(2020). 2020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1. 중등직업교육 인력양성 효율화 모색을 위한 직업계고 학과변동 추이 분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확실적인 직업계고 진로·취업 정책에 따른 고졸 취업의 현실적 한계 직면**

- 최근 직업계고 취업률이 하락하고 진학률이 상승하는 추세임.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에 대한 요구가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으로 확장되었으나 정부의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정책은 취업(선취업 후학습)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함.
-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진학하지 않은 진로 미결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진로 목표와 요구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정책의 재설계 필요

[2008~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 진학률, 진로 미결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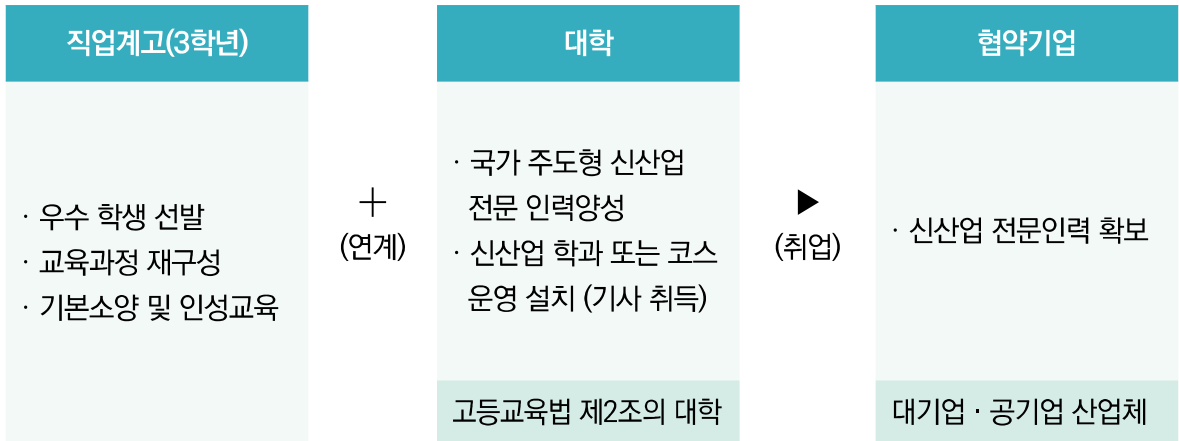


※ 자료 : 안재영·김세훈(2022).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기지표와의 관계. KRIVET Issue Brief 2022년 236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보다는 정부의 취업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간에서 고졸 채용에 관한 요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안재영·김세훈, 위의 책, 2022.).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산업 고도화에 따른 중등-고등교육 간 연계 강화 필요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대되고 있고, 중등-고등교육 연계가 강조되고 있으며(ILO, “ILO Toolkit for Quality Apprenticeships: Volume 2: Guide for Practitioners”, 2020), 독일은 직업교육 트랙과 일반교육 트랙을 엄격히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업교육 단계에 전문가, 학사,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직업교육에서도 아카데미 경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을 개정함(유진영, “독일 직업교육법 개정(2019)의 배경과 함의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7(1), 2022.).
- 산업발전에 따른 직무 고도화로 AI, 반도체 등 직업계고교 교육과정 3년만으로는 학습이 부족한 영역 다수 발생. 따라서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동일 계열 대학 진학으로 고속권 고급인재 육성이 가능하도록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 확대 입법 필요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제2항 제14호의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1.5%에서 5~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개정
-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교-대학 연계 교육 : 고교-대학 계약학과 운영으로 고교 → 대학 진학 → 계약 기업으로 취업 : 지원사항(국가장학금 수준의 장학금 지원, 협약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후학습 지원(석·박사) 연계 과정 개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